

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2002년 4월 1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1.주요 골자

-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, 월 1회 동시에 휴무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근무 또는 격주로 전 공무원을 전일근무 할 수 있도록 개정(안제16조의2 제1항)
- 공직자 연가 일수에서 결근, 정직, 직위해제 일수제외 방법 개정 (안제20조 제2항)
- 국민의료 보험법 시행령 명칭변경(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으로) (안제22조)

3.법적 근거

-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(2002. 4. 3)

4.검토 의견

-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,
- 현행, 본조례 제16조의 2 제1항에서,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,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에서,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므로써, 3가지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 조례로 규정케 하고 있으나,
- 휴무 및 전일근무제 실시 방법을 3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 할 경우 근무시간이 통일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어 원망과 불신을 초래케 될 우려가 있으므로, 시행방법을 최소한, 도 단위라도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